

영등포구의회
제19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9. 14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5호로 2015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정함(안 제3조)

다. 생활임금 심의기구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
규정을 정함 (안 제4조~제6조)

라.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·고시하도록 함(안 제8조)

마.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반영 기관(업체)에 대한 우대 등
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정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예산반영 (비용추계서 첨부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영등포구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2015.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60%인 15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7개구는 입법예고, 1개구는 상정 예정이며, 2개구가 미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. (세부내역 따로 붙임)
- 또한,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를 비롯한 5개구에서 2015년도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중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5,580원의 120% 내외인 6,687원부터 7,150원까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음.

기관명	생활임금액	기관명	생활임금액
서울시	6,687원	도봉구	6,850원
노원구	7,150원	구로구	6,687원
성북구	7,150원	종로구	6,737원

-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, 주요 조문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설치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생활임금의 결정, 생활임금의 장려 등으로 편제 되어 있으며,
-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“생활임금 비용추계서”에 따르면 구청 직접고용 근로자 189명, 출자·출연기관 근로자 230명, 총419명에 대한 생활임금 예산으로 5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, 이는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(비용 추계서 따로 붙임)
- 다만,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2호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제3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고

있는데,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관 및 업체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액을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생활임금액으로 정하게 됨으로써,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1)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문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.

-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하는 생활임금심의 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,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고루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는 등 생활임금 주요사항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됨.

1) 제6조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,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